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3403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노인 대상 보청기 급여화	3

I. 개요

1. 김영배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340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김영배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4. 8. 30.
- (3) 회 부 일 : 2024. 9.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은 보청기 구매 시 최대 117만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청각장애인이 아닌 노인성 난청 환자는 보청기 구매 시 건강보험 급여를 전혀 받을 수 없음.

65세 이상인 노인 중 약 30%가 노인성 난청 환자이나, 보청기 구매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어 노인성 난청 환자의 보청기 사용 비율은 12.6%로 낮은 수준임.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65세 이상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의 보청기 구매·사용에 따르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51조의2 신설 등).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40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노인 대상 보청기 급여화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65세 이상 노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제51조의2(노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65세 이상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보청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u> <u>② 65세 이상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청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청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u> <u>③ 제1항에 따른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u>

제57조(부당이득의 징수) ① 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
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준요
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나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에 대하여 그 보험급여나 보험급
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
한다.

② (생략)

③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 보고나 거짓 증명(제12조제6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를 양도·대여하여 다른 사람이 보험급여를 받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이나 거짓 확인(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준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의 속임수 및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가 실시된 경우 공단은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하여 제1항

② (현행과 같음)

③ _____

-----준요

양기관,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나

보청기를 판매한 자-----

에 따른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다. ④ · ⑤ (생략)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 ③ (생략) ④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는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날부터 3년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재산을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은닉 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2. (생략) 3.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 또는 보험급여를 받은 <u>준요양기관 및 보조기기 판매업자</u> 4. (생략) ② ~ ④ (생략)	-----.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96조의4(서류의 보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u>청구한 자</u> 및 제51조의2제2항에 따라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 ----- -----. 제104조(포상금 등의 지급) ①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 ----- ----- <u>준요양기관, 보조기기 판매업자</u> 또는 <u>보청기 판매자</u> 4.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51조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¹⁾, 이에 따라 등록된 청각장애인의 보청기 구입에 대하여 보험급여(공단부담률 90%)²⁾를 지급하고 있음.

-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3년 청각장애인 대상 보청기 급여

1)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장애인에 대한 특례) ① 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이하 이 조에서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다.

② 장애인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는 가입자나 피부양자의 위임이 있는 경우 공단에 보험급여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단은 지급이 청구된 내용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보조기기를 판매한 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보조기기 판매업자의 보험급여 청구, 공단의 적정성 심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들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보조기기의 종류)

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8.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용 보조기기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의 품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별표1] 보조기기 품목 분류체계

3. 일상활동 보조기기

3 22 06 03 보청기(Hearing aids)

소리를 집중, 집성, 확대하는 장치로 소리 집성기, 신체 착용형 보청기, 안경형 보청기, 귓속형 보청기, 귀걸이형 보청기, 촉각형 보청기, 임플란트 연결용 보청기 등이 포함됨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보조기기(소모품을 포함하며, 이하 “보조기기”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범위 및 공단의 부담금액 등은 별표 7과 같다.

[별표 7]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제26조제1항 관련)

3.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는 다음 각 목의 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지급기준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입자·피부양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실시한다. 다만, 영 별표 2 제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구입한 보조기기에 대해서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가. 보조기기의 유형 및 구분 항목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제품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제품별로 고시하는 금액(제1호나목 후단에 따라 제품평가를 거쳐야 하는 보조기기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가입자·피부양자가 해당 보조기기를 구입한 금액

지원 건수는 총 6만 1,377건이고, 594억 8,500만원의 보험급여가 지급되었음.

<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 지원 현황 >

(단위: 건, 백만원)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57,119	67,304	45,265	50,529	55,543	53,893	57,924	56,668	61,377	59,485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록된 청각장애인이 아닌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에서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음³⁾. 이에 따라 노인성 난청 등으로 인해 보청기를 구입한 노인으로서 청각장애인이 아닌 경우에는 보청기 구입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상황임.

□ 그런데,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⁴⁾에 따르면, 자신의 청력수준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으로 느끼는 노인 비율은 전체 노인 중 22.0%로 나타나고 있으나 전체 노인 중 보청기 사용률은 8.3%에 불과한 것으로

3)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할 때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에 대한 치료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으로 정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9조(비급여대상) ①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이하 “비급여대상”이라 한다)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비급여대상(제9조제1항관련)

4. 보험급여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및 그 밖에 건강보험급여원리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라. 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보험급여를 실시하는 보장구를 제외한 보조기·보청기·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등 보장구. 다만, 보청기 중 보험급여의 적용을 받게 될 수술과 관련된 치료재료인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보청기는 제외한다.

4)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노인실태조사」, 2023

나타나고 있음. 2021년 기준 노인빈곤율이 39.4%⁵⁾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층의 보청기 구입 비용⁶⁾에 대한 부담이 보청기 사용률이 낮게 나타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⁷⁾

< 노인 청력수준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여부 및 보청기 사용률 >

(단위: %)

구분	보청기 사용률	자신의 청력수준으로 인한 일상생활 불편 여부			
		불편하지 않다	불편한 편이다(A)	매우 불편하다(B)	A+B
65~69세	3.3	92.2	7.2	0.5	7.7
70~74세	6.6	83.4	15.4	1.2	16.6
75~79세	9.3	74.7	22.7	2.6	25.3
80~84세	13.0	61.4	34.1	4.6	38.7
85~90세	18.6	48.9	42.9	8.2	51.1
90세 이상	26.2	33.6	45.3	21.2	66.5
전체	8.3	78.0	19.3	2.7	22.0

자료: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노인실태조사」, 2023

□ 개정안은 65세 이상의 노인인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보청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도 보험급여를 제공하도록 규정하여 난청을 겪고 있는 노인층의 보청기 구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노인 보청기 구입에 대한 보험급여에 대해서는 노인성 난청환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의 필요성 및 노인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라는 측면과 함께 노인에 대한 보청기 보험급여 적용 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수반될 수 있는 점, 한정된 보험 재정 하에서

5) 보건사회연구원, 2023년 빈곤통계연보, 2024

6) 청각장애인 대상 건강보험공단 보청기 급여기준액 : 131만원

7) 박무균, 노인보청기 건강보험 적용의 현실적 고려 사항, 청각보조기기 지원과 노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회토론회 자료집, 2024. 2. 14.

보청기에 대한 우선적인 급여 적용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의료급여의 범위에 ‘보청기’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3404호)이 발의되어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라.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 의견

□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은 신체 장애의 경감·완화와 장애에 따른 부상·질병 발생 위험 감소를 위하여 장애인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실시하고 있는바, 생활상의 불편 등을 이유로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것은 타 질환과의 형평성, 보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성 난청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복지를 증진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보청기에 대한 급여를 확대하는 것은 현행 건강보험 급여체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고, 급여 적용을 받지 않는 타 노인성 질환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으며, 보험재정의 추가 지

출을 수반하게 되므로, 보험급여의 효율적 배분, 보험 재정여건 등에 대한 종합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 대한의사협회

- 노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노인 보청기에 대한 보험급여 시 상당한 재정이 소요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용이라는 틀 안에서 별도의 재정확보 수단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보장성 강화의 우선순위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03